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10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염태영 · 김종양 · 박용갑
정일영 · 이강일 · 김기표
박정현 · 권칠승 · 김남근
황명선 · 안도걸 · 황 희
김우영 · 안태준 · 손명수
조인철 · 정준호 · 박희승
홍기원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란” 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 또는 대물 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감독”을 “조정”으로 한다.

제8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구성·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해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5조의2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제28조의16에 따른 지원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조잡하게”를 “부실하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란</u> ” <u>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 또는 대물 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u>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u>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u>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u> 2. <u>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u> 3. <u>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u>	

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
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
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8장 감독

<신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
----- 15조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장 조정

제32조(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 구성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
련된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

제33조(대리시공) ① 국토교통부

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해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5조의2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제28조의16에 따른 지원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삭 제>

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
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
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
외건설사업자(이하 “대리시공
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
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
에 관한 권리·의무를 지체 없
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으로 손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填)
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생략)

제38조(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

----- 부실하게 -----

-----.